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## 제 목 **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**

1. 전세연 제2019-126호(2019.08.26.)와 관련 입니다.

2. **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** 중 운전경력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) 제1항제2호

2.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

가.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

나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

다.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1)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
2)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

※ 불 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19- 220호 ( 2019.08.27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